

《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결과 브리핑 》

(5차) 소상공인 분야

- 소상공인의 플랫폼 독과점 폐해 위기 극복 방안 -

2023.4.5.(수), 오후 4시 40분,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
서영교 · 박주민 · 김경만 · 이동주 국회의원(책임의원) 참석

-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총 8회)는 지난 1월 12일 이재명 당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9대 민생회복 프로젝트(#붙임1 참조)’ 일환으로 당면한 민생 위기 극복 해법을 추가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원장 정태호 의원)과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의원)가 공동 주최하고, 직능단체, 시민단체, 노동계, 학계 등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과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소속 39명의 국회의원이 정책과 입법과제를 전담·추진하는 ‘과제별(분과별) 책임의원(#붙임2 참조)’ 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다.
- 오늘은 다섯 번째로 <소상공인> 분야 ‘소상공인의 플랫폼 독과점 폐해 위기 극복 방안’ 을 주제로 소상공인분들이 호소하는 플랫폼 독과점 폐해의 심각성과 대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과제별 책임의원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이 발제·토론을 진행했다.

- 오늘 토론회에 앞서 지난 3월 27일 박주민, 서영교, 이동주 의원이 참여한 ‘책임의원 정책간담회(소상공인 분과)’ 를 열고 토론회 세부 토론 의제 및 정책입법과제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은 ‘책임의원 정책간담회’ 와 오늘 토론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안된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 한 후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회복 정책입법과제」 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를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에게 제안하고, ‘과제별 책임의원’ 중심으로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소상공인’ 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폐해의 심각성

- 1) 최근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과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오픈마켓과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중개거래 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전 산업분야에 확산되고 있고,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의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존도도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 ① 온라인쇼핑 비중 2022년 206조원으로 전체 소매판매 551 조의 27.3% 차지, ② 온라인쇼핑 거래액 추이 : 2010년 25조2천억, 2015년 54조, 2019년 134조, 2020년 157조3천억, 2021년 187조, 2022년 206조로 급증 ③ 음식서비스 (61.5%), 생활용품 (48.9%), 음식료품 (39.4%) 등 소상공인 업종분야 급증 ④ 이베이코리아(G마켓, 옥션)·SK플래닛(11번가)·인터파크·포워드벤처스(쿠팡) 등 4대 온라인쇼핑 플랫폼 비중이 114조로 약 55% 차지함 (자료: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

[참고] ① 배달앱 3사의 외식 배달음식 플랫폼의 독과점 시장구조 : 배달의 민족 57.7%, 요기요 24.7%, 쿠팡이츠 17.2% ② 코로나 19 이전에도 O2O(Online to Offline) 거래의 급속한 증가 : 온라인에서 구매 탐색, 의사결정 결재 → 오프라인에서는 소비만하는 거래 ③ 배달음식 앱 거래 : 2017년 2조 3,453억원 → 2018년 4조1,799억원으로 2배 증가, 2019년 1분기 1조 7,910억원으로 2018년 1분기 9,258억 대비 93.5% 증가 ④ 이미 코로나19 이전에도 1인 가구 증가, 모바일 결제서비스, 배달대행 등으로 플랫폼 중개서비스 거래가 급속히 발전함(자료 :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

- 2)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의 경우 규모의 경제 등 플랫폼 산업의 특수성에 따른 시장 집중효과가 지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관련 피해사례 등이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참고1] 중소기업 중앙회 「2021년 플랫폼 불공정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3년 내에 플랫폼거래에서 불공정 경험을 하였다는 입점업체가 20.7%, 과도한 수수료 등 수익배분이 불균형하다는 입점업체가 39.7%에 달했으며, 수익배분이 적정하다는 업체는 11%에 불과했음

[참고2] 중소벤처기업부의 「2021년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53.4%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 시 수수료 및 거래절차 관련 부당행위, 타 플랫폼 이용 제한 및 차별적 취급, 부당 요구 등 플랫폼 사로부터 부당행위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음(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 2023.2.20.)

- 3) 특히 두 세 개의 플랫폼이 지배하는 독과점화와 같은 승자독식 시장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바, 입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상품을 중개 판매하는데 그치지 않고 중개서비스에서 축적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성이 좋은 상품·서비스는 직접 판매하여 판매점유율을 늘리고 있으며, 중개수수료뿐만 아니라 배송, 결제, 광고, 물류 수수료 등을 결합하여 입점업체들에게 과도한 수수료와 비용을 전가시키고 있다.

더 나아가 플랫폼 알고리즘의 조작을 통해 자사 상품의 노출 순위나 방식, 배송, 판매시간 등에서 우대하고 자사 상품과 경쟁하는 입점업체 상품은 차별하는 시장지배 남용행위가 만연해지고 있다. 같은 플랫폼에서 자사 상품 판매와 입점업체 상품 중개행위를 동시에 영위함으로써 상시적인 이해충돌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일부 플랫폼에 의한 승자독식의 독과점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음. 미국 하원 법사위 반독점소위에서 발표한 「디지털 시장 경쟁 조사 보고서(2020.10.6.)」는 진입장벽과 시장집중도가 매우 높은 디지털 시장의 특성상 게이트키퍼(Gatekeeper)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이 지배력을 남용하여 혁신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며, 언론의 기능을 훼손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함. 또한 동 보고서는 GAFA(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애플) 등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이 각각 소셜네트워크, 검색광고, 전자상거래, 앱마켓 시장 등에서의 지배력을 바탕으로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자사우대행위 등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고 지배력을 유지·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함(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 2023.2.20.)

4)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자 가맹점·대리점 본사들이 영업의 어려움을 소기업인 가맹점주, 대리점주들에게 전가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필수물품이라며 ‘시중가격 보다 고가의 물품 구매 강요’, ‘직영점과 가맹점 사이의 가격차별’, ‘가맹점주 단체 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물품공급 중단 및 가맹해제(부당 거래거절)’, ‘본사가 기획한 할인 쿠폰 및 할인 행사 등의 비용을 가맹점주에 전가’ 하거나 ‘과도한 폐업 위약금을 부과’ 하는 등 그 동안 많이 시정되어 왔던 불공정행위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5) 또한 온라인 포털 플랫폼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언론지형 등에도 광범위한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언론진흥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 열 명 중 여섯 명 이상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뉴스를 언론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뉴스 독자 대부분이 포털을 통해 언론기사에 접속하고 있어 언론의 포털에 대한 종속성 또한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참고1]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1 언론 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포털을 언론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65.1%였고, 모바일 기기를 통한 인터넷 포털 뉴스 이용자가 84.5%임. 또한, 네이버로 뉴스를 본다는 응답자가 68.8%로 전체 인터넷 포털 이용자의 90.7%를 차지함

[참고2] 2021년 기준으로 검색시장에서 네이버가 56%를,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서는 카카오톡이 92%를, e-커머스 시장에서는 네이버가 17%를 차지함(관계부처합동,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 2022.12)

[참고3] 2023년 2월 27일. 경인일보가 국내 포털 시장 과점 지배자이자 경쟁관계인 네이버-카카오 두 포털사가 함께 거래를 거절한 것이 언론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위반 사항이라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함. 국내 포털 시장에서 네이버(64.5%)와 카카오(다음·19.9%)는 합계 점유율이 84%가 넘는 과점 지배자다. 포털 시장을 두고 경쟁해야 할 두 사업자는 언론사 인터넷 뉴스의 포털 공급 방식을 '뉴스제휴평가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 공동으로 진행해 왔음

6)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인 단체들은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시장불균형의 대표적인 영역으로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시장불균형을 들고 있다.

2. 윤석열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폐해에 대한 자율규제 정책의 한계

- 1)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은 ‘플랫폼의 독과점 폐해’에 대해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2022.10.17.)고 강조했다,나,

정부는 오히려 민간 주도 자율규제 원칙만을 내세우며 플랫폼의 입점업체와 중소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부과, 노출랭킹 조작, 광고와 판매 장려금 강요 등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아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참고1]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 19일부터 플랫폼 거래에서 발생하는 사업자 간 갑-을 관계 정책과 관련하여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원칙에 따라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운영 중에 있으며, 구체적 자율규제 방안 마련을 위하여 ① 갑을, ② 소비자·이용자, ③ 데이터·AI, ④ 혁신공유·거버넌스(ESG) 등 4개 분과별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를 운영하고 있음.

[참고2] 2022년 9월 1일 시작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갑을분과회의에서 입점업체는 10대 요구사항(① 신의성실 원칙 적용, ②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③ 수수료 적경비용 산정 ④ 수수료 상한제·차등제 적용, ⑤ 수수료 광고료의 명확한 설정, ⑥ 판매대금 정산시기 명확화, ⑦ 검색기준 공개, ⑧ 단체협상권 인정, ⑨ 플랫폼 유통공시제, ⑩ 일방적 계약해지 금지)을 제시했으나 플랫폼기업들은 위 밑줄 친 5개항만 합의하고 핵심사항은 거부함(과도한 수수료 규제, 랭킹노출 등 검색기준 공개, 단체협상권 등). 더구나 플랫폼 자율기구에 참여하지 않은 플랫폼 기업들에는 위 자율합의가 적용되지 않음

- 2) 윤석열 정부는 독과점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를 강조하며 시장자율에 맡기고, 카카오 불통 사태에서 드러난 일부 독과점 폐해에 대해서만 대응 TF를 구성하는 등 소극적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 더불어 이 대응 TF에는 그 동안 윤석열 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 담론을 주도해 온 인사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3) 윤석열 정부의 자율규제 정책이 가능하거나 자율상생이 되려면 적어도 입점업체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여 대등한 거래조건 교섭이 가능해야 한다. 자율협약에 필요한 입점사업자단체 단체협상권 부여,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행정개입 등 자율상생 정책을

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온라인 플랫폼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약칭, 온플법)」이 필요하다.

- 4) 결론적으로 산발적으로 오픈마켓, 배달앱, 검색 등 분야별 시장조사나 불공정행위조사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미국 하원의 「디지털시장 경쟁 조사 보고서」처럼 플랫폼이 시장과 사회에 미치는 지배력 정도,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행위 양태, 그에 따른 부작용과 필요한 입법 등에 대한 종합적 조사가 필요하다. 정부가 하지 않으면 국회나 정당차원의 디지털시장 경쟁조사가 필요하다.

[참고] 미국은 공정거래위원회 내에 플랫폼 독과점 규제를 위한 전문 감독부서인 ‘디지털 시장감시국’이란 전문 부서 신설하고 국회에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음

3.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 을지로위원회가 제안하는 소상공인 대책

〈독과점 플랫폼으로부터
입점업체, 소비자, 언론 등의 보호를 위한 대책〉

- 1) ‘네카쿠배(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 민족)’ 등 독과점 플랫폼 기업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실태조사를 추진할 것이다
- (1) 한국은 다국적 독과점 플랫폼 가파(GAFA ;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뿐만 아니라 국내 플랫폼 기업인 ‘네카쿠배’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 민족)의 독과점에 따른 많은 폐해 사례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참고] 미국과 EU차원에서 가파(GAFA ;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독과점 플랫폼에 대한 독과점 규제 입법을 추진할 때 입법 필요성과 입법 내용(규제 대상, 범위, 방식 등)을 정하는데 방향 제시를 해 준 것은 미 하원 법사위원회(Committee on the Judiciary) 산하의 ‘반독점·상업·행정법소위원회’(Subcommittee on Antitrust, Commercial and Administration)에서 추진한 「디지털 시장 경쟁 조사 보고서(Investigation of Competition in Digital Markets)」임

(2)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과 을지로위원회는 미국 하원의 「디지털 시장 경쟁 조사」와 같은 한국판 「디지털 시장 독과점 플랫폼의 실태 조사」를 통해 정확한 독과점 플랫폼의 폐해의 실태 파악과 대안 제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할 것이다.

(3) 한국판 「디지털 시장 독과점 플랫폼의 실태 조사」는 디지털 시장에서 독과점 플랫폼이 진입장벽을 형성하여 디지털 스타트업 등의 혁신을 가로막고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침해, 언론의 다양성과 자유 침해 등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온라인 검색, 온라인 상거래 소셜네트워크와 소셜미디어, 모바일 앱 스토어, 모바일 운영체제, 디지털 지도, 클라우드 컴퓨팅, 음성비서, 웹 브라우저, 디지털 광고 등 주요 플랫폼 시장 영역별로 독과점 플랫폼의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2) 세계적으로 독과점 플랫폼에 대해 공통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자사우대, 끼워팔기, 최혜대우 요구, 안티스티어링(anti-steering)’ 등 적어도 4대 독과점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독과점 플랫폼 규제 입법을 추진할 것이다.

- EU는 독과점 플랫폼의 규율을 위한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 Act, DMA)를 제정하여 2023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 독일은 공정거래법에 해당하는 「경쟁제한방지법」을 개정하여 2021년 1월부터 독과점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 EU, 독일 등이 독과점 플랫폼의 독과점 지위남용 행위 중 공통적인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크게 4가지 행위이다. ‘자사우대, 입점업체 차별행위’, ‘끼워팔기’, ‘최혜대우 요구’, ‘안티 스티어링(Anti-Steering)’ 등이다.

[참고] 카카오 모빌리티의 자사 가맹점인 카카오블루에 대한 배차 몰아주기(자사우대),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 등의 결제, 배송, 물류, 식자재배급 끼워팔기, 다른 오픈마켓보다 낮은 가격의 판매요구(최혜대우 요구), 안티 스티어링(플랫폼 이용업체가 소비자에게 다른 플랫폼 또는 대체 결제수단 권유를 금지하는 것) 등은 한국의 독과점 플랫폼에서도 가파(GAFA)를 그대로 모방하여 시행하고 있는 독과점 지위남용 행위의 대표적 사례다

3) 더불어민주당은 독과점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광고비 등 비용 전가, 자사상품 우대행위, 입점업체 상품 차별행위 등 독과점 남용행위를 규제하고, 영세사업자에 대한 우대 수수료를 적용, 공정거래위의 수수료 관련 실태조사 실시 및 공표, 사업자단체 보상 문제 등까지 촘촘하게 국회차원에서 논의하여,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약칭, 온플법)」 통과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4) 현행 ‘가맹사업법’에는 상생협약 체결을 위한 점주단체 구성권이 명문화돼 있지만 본사가 응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다. 더욱이 ‘대리점법’에는 단체교섭권에 대한 명문규정도 없다.

따라서 소상공인단체의 단체교섭을 통한 거래조건 개선 상생협약 활성화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의 플랫폼 중개거래 조건 개선과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입점업체단체의 단체교섭권과 가맹대리점 본사와 점주단체 간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참고] 현재 한국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중기협동조합의 공동행위는 담합의 예외로 인정. 공정거래법은 원칙적으로 담합 부당공동행위 거래조건 개선과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인가받으면 가능하나 인가 받은 사례가 없음. 독일은 중기의 공동행위에는 담합 적용제외. 일본은 협동조합 활동에는 담합 적용 제외

[붙임1] 당 대표 신년 기자회견 “9대 민생회복 프로젝트” (2023.2.27. 현재)

목표	9대 민생 프로그램(상임위)	세부내용 및 추진 방안	대책 [’23 예산]	수혜 대상
합계			예산 : 30조원 수준	
高금리 피해 회복	① 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 (정무)	- 부실 위험이 있는 저신용·저소득층 대상으로 긴급 생계비 대출 지원 - (개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서민금융법 제47조 제2항 단서 추가를 통해 서민금융보안계정의 은행 출연비율 하한을 설정 → 이 경우 현재 은행 출연비율 0.03%→0.03% 상향 하여 시중에 약 7,000억원 추가 자금 조달 효과 발생	입법: 서민금융법 → 0.7조원 대출 효과 예산: 0.1조원	저신용자
	② 중소기업·자영업자 이자 감면 (정무)	- 코로나 방역 기간인 2020.3.~2022.3.사이의 중소기업, 자영업자 부채 증가분에 대한 1.5% 이자 지원	예산: 7.4조원	1. 가계 2. 자영업자 3. 중소기업
	③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정비 감면 지원 (중기)	-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임대료 등 고정비대출 및 지원 - (입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 지원법)	입법: 자영업자 임대료 지원법 예산: 3조원	
	④ 취약 차주 저금리 전환 대출 (정무)	- 부채이자 감면 프로그램 예산 내에서 한계 차주 저금리 전환 대출 지원 재원 확보	예산: 1.5조원	
高물가, 에너지요금 부담 경감	⑤ 에너지 물가지원금 (복지)	- 물가상승 피해계층 중심의 하후상박형 지원	예산: 7.2조원	소득하위 80% 4,117만명
	⑤-1 소상공인·자영업자 난방비(가스 및 전기요금) 지원 (중기)	- 소상공인 대상 가스요금 및 전기요금 지원 (1안 30만원, 2안 40만원) - (입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 에너지지원법)	입법: 소상공인 에너지지원법 행사: 간담회 예산: (1안)2.03조원 (2안)2.7조원	소상공인·자영업자 676만 (무점포소매업 제외)
	⑤-2 농업 난방비(전기 및 전기요금) 지원 (농업)	- 시설원에 농가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확대 - 육계 총가 난방비 지원 - 농사용 전기료 인상분 차액지원(어업포함)	997억원 262억원 0.2조원	원예농가 5만호 육계농가 0.3만호 농가 196.4만호
	⑥ 지역화폐 예산 증액 및 제도화 (행안)	- (입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발행 의무화, 지원사항 의무화)	입법: 지역사랑 상품권법 개정 예산: 0.7조원	전국민

목표	9대 민생 프로그램(상임위)	세부내용 및 추진 방안	대책 ['23 예산]	수혜 대상
주거 안정	⑦ 미분양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국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호당 1.6억~3억의 최대 95%를 출자·용자하는 매입임대사업 10가지를 시행중임 - 2023년도 매입임대예산은 총 6조763억원이며 전년 대비 3조797억원 감액됨 - 미분양 등 매입임대사업 5조원을 추가 집행할 경우, ①기존사업으로는 32,885호 매입가능, ②「공동주택실거래가지수」(22.11월) 시가기준으로 서울(40㎡) 12,837호, 수도권(40㎡) 21,053호, 지방(40㎡) 65,790호의 추가매입 가능. 전국 부실·미분양주택 25%를 구제 효과 	예산: 5조원	무주택자
	⑧ 전세 보증금 이자 지원 (정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택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이자에 대해서 1.42~2.78% 이자지원 - 23년 예산 지원대상 17.6조원에서 1.4조원 추가 확대(23년 국회예산심의회시 2.0조원 기확대) 	예산: 279억원	무주택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⑨ PF 배드뱅크 설립 (정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분양 및 부실채권 대책 (비은행권 PF 정상화) - 부실기업 정리가 아닌 정상화가 목적 - (입법)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입법: 자산관리 공사법 개정 행사: 세미나 예산: 2조원	1.중소 건설사 2.제2금융권 3.전국민* *금융안정 측면

[붙임2] '과제별(분과별) 책임의원' 신청 현황 (총 39명)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책임의원 신청 현황 (2023.3.2.현재)

no	국회의원	비고	no	국회의원	비고
<1차> 총론(3/8)			<5차> 소상공인(4/5)		
1	박주민	좌장	1	서영교	좌장
2	김영배	간사(토론)	2	이동주	간사(토론)
3	우원식		3	김경만	
4	민병덕		4	김주영	
5	정태호		5	민병덕	
6	홍기원		6	박주민	
<2차> 금융(3/15)			7	윤영덕	
1	박주민	좌장	<6차> 노동/고용1-특고(4/12)		
2	민병덕	간사(토론)	1	이학영	좌장
3	김성주		2	이수진(비)	간사(토론)
4	신동근		3	여기구	
5	오기형		4	최인호	
6	양경숙				
7	이동주				
<3차> 주거·부동산(3/22)			<7차> 노동/고용2-문화예술(4/19)		
1	전혜숙	좌장	1	홍익표	좌장
2	조오섭	간사(토론)	2	유정주	간사(토론)
3	박상혁		3	김승원	
4	서동용		4	소병훈	
5	윤준병		<8차> 노동/고용3-돌봄(4/26)		
6	이수진(지)		1	남인순	좌장
7	홍기원		2	최혜영	간사(토론)
<4차> 중소기업(3/29)			3	권인숙	
1	정태호	좌장	4	서영석	
2	김경만	간사(토론)			
3	김교흥				
4	김한정				
5	이용빈				
6	이용선				
7	이원욱				
8	이장섭				